

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03. 10. .

제 출 자 : 이 천 시 장

개정부분 : 부분개정

개정이유

- 현행 시세감면조례의 내용 보완 및 단서조항 삭제함
-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
- 장애등급판정을 받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

주요골자

가. 단서조항 삭제(제2조제2항 및 제4조제1항)

나.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제7조)

- (1) 당초 : 유료노인복지시설
- (2) 변경 : 노인복지시설

다. 문화재에 대한 감면(제10조2항)

- (1) 당초 :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50%를 경감한다
- (2) 변경 :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라. 인용법령의 추가에 따라

- (1) 당초 :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
- (2) 변경 :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 및 수산물품관리법 제16조제1호

마. 인용법령의 변경됨에 따라 조문정리(안 17조)

(1) 당초 :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6조

(2) 변경 :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제12조

바.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

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 면제

개정조례안 : 별첨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관계법령발췌서 : 별첨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사전예고결과 : 의견없음

○ 예고기간 : '03. 8. 13 ~ 9. 3

기타 참고사항 : 준칙공문

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 내지 14등급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으로 하고, “국가유공자”를 “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한다.

제2조제2항 및 제4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7조중 “유료노인복지시설”을 “노인복지시설”로 한다.

제10조제2항중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를 경감한다”를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를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 및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제1호”로 한다.

제19조중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6조”를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제12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		자치행정국 세무과
입 안 자	실·과장 직위·성명	세무과장 박 순 자
	담당·팀장 직위·성명	시세담당 김 계 속
	담 당 자 성명·전화	김 계 속 (644-2188)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p>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① (생략)</p> <p>②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국가유공자의 직계존·비속, 국가유공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 다만,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이미 면제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p> <p>1. ~ 4. (생략)</p> <p>③ (생략)</p>	<p>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등에 대한 감면) ① (현행과 동일)</p> <p>②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1급 내지 7급, 광주민주화운동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1급 내지 14등급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단서 삭제></p> <p>1. ~ 4. (현행과 동일)</p> <p>③ (현행과 동일)</p>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안)
<p>제19조(재래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재개발·재 건축사업시행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1에 의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경감한다. 1. ~ 2. (생략)</p>	<p>제19조(재래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 치법 제12조 ----- ----- ----- 1. ~ 2. (현행과 같음)</p>

관계법령발췌서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第5條 (産地加工産業의 육성등) ①農林部長官은 産地에서 加工品の 生産을 業으로 하거나 하고자 하는 者 (이하 "加工業者"라 한다)에 대하여 加工品の 生産 및 開發, 加工品 專門販賣店의 設置、운영, 加工品の 輸出促進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資金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1997.3.7, 2001.1.29>

②삭제 <1999.1.21>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資金支援의 對象者가 加工品生産을 위한 工場을 設置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당工場設置 地域을 관할하는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事業計劃書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9.1.21, 2001.1.29>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資金支援의 對象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事業計劃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다음 各號의 許可、認可、동의、승인、解除등을 얻거나 申告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4.12.22, 1995.12.29, 1997.3.7, 1999.1.21, 1999.2.5, 2002.12.30>

1. 砂防事業法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伐採등의 許可 및 同法 第20條의 規定에 의한 砂防地 지정의 解除

2.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3. 삭제<1997.3.7>

4. 都市計劃法 第4條의 規定에 의한 土地의 形質變更등의 許可

5. 私道法 第4條의 規定에 의한 私道の 開設許可

6. 農地法 第3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農地轉用의 許可

7. 水道法 第36條의 規定에 의한 專用水道の 敷設認可

8. 삭제<1997.12.13>

9. 草地法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草地轉用의 許可 또는 申告

10. 地域均衡開發및地方中小企業育成에관한法律 第15條의 規定에 의한 土地의 形質變更등의 許可

11.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第13條의 規定에 의한 工場設立등 승인

⑤第4項의 規定에 의한 사업을 시행하는 者가 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建築法에 의하여 建築許可를 받은 때에는 다음 各號의 許可를 받거나 申告를 한 것으로 본다.

1. 道路法 第40條의 規定에 의한 道路占用許可 및 동법 第50條의 規定에 의한 接道區域에서의 土地形質 변경등의 許可
2. 下水道法 第24條의 規定에 의한 排水設備 설치의 申告
3. 建築法 第15條의 規定에 의한 가설 建築物의 建築許可 및 申告

⑥市長、郡守、區廳長은 第4項 및 第5項 各號의 사항중 그 權限이 위임되지 아니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關係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거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 (자금의 지원)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업 등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수산가공품의 생산、개발、수출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의 설치、운영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제12조 (시장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구역의 선정 및 지원) ①중소기업청장은 시장재개발、재건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장(市場)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추천한 시장(市場)을 시장재개발 사업시행구역 및 시장재건축 사업시행구역(이하 "사업시행구역"이라 한다)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規定에 의하여 선정된 사업시행구역안의 토지 등의 소유자, 시장재개발조합 또는 시장재건축조합(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시행구역이 선정된 후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시행구역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및 관계자료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사업시행구역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중소기업청장은 제3항의 規定에 의한 사업시행구역의 변경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그 변경을 승인하여야 한다.

⑤중소기업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구역을 선정하거나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구역의 변경을 승인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⑥사업시행구역의 선정·변경·공고 및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광주민주유공자에우에관한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국가가 응분의 예우를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예우의 기본이념)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에 기여한 광주민주화운동은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애족정신의 귀감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대응하여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3조 (정부의 시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광주민주화운동의 민주·정의실현의 이념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대상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된 자(이하 "광주민주유공자"라 한다)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의한 예우를 받는다.

1. 광주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또는 광주민주화운동으로 인한 질병의 후유증으로 인해 사망한 자로서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보상이 된 자

2.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 또는 광주민주화운동으로 인하여 질병을 앓고 있는 자로서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장해등급의 판정을 받고 보상을 받은 자

3. 기타 광주민주화운동희생자 :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자

제5조 (유족등의 범위) ①이 법에 의하여 예우를 받는 광주민주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남자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남자 및 55세 미만의 여자인 직계존속과 성년남자인 형이 없는 미성년 제매

②제1항제1호의 배우자의 경우,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하며, 광주민주유공자 사망후 다른 사람과 사실혼중에 있거나 있었던 자를 제외한다.

③제1항제2호의 자녀의 경우, 양자는 광주민주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인에 한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④제1항제3호의 부모의 경우, 생부 또는 생모외에 광주민주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부 또는 모의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광주민주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자 1인을 부 또는 모로 본다.

⑤제1항제4호의 조부모의 경우, 성년남자인 직계비속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한 부사관, 병역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자, 병역법 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전투경찰대원·교정시설경비교도 및 의무소방원으로 복무중인 자,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의무복무기간중에 있는 때에는 성년남자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⑥제1항제5호의 미성년 제매의 경우, 60세 미만의 남자 또는 55세 미만의 여자인 직계존속과 성년남자인 형이 있더라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현역병으로서 의무복무기간중에 있는 때에는 60세 미만의 남자 또는 55세 미만의 여자인 직계존속과 성년남자인 형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6조 (예우원칙) 광주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광주민주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따라 예우를 달리 할 수 있다.

제7조 (등록 및 결정) ①이 법의 적용대상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국가보훈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한다. 다만, 광주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요건 해당 여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순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이 법에 의한 예우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 ①이 법에 의하여 예우를 받을 권리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②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 적용대상자로 결정된 광주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이 법에 의한 예우를 받을 권리가 소멸된다. 이 경우 광주민주유공자가 국적을 상실한 때에는 그 가족의 예우를 받을 권리도 함께 소멸된다.

1. 사망한 때

2. 광주민주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

3. 국적을 상실한 때

4. 제6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5. 그 밖에 이 법 적용대상자로서의 요건이 소멸한 때

③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광주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된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예우를 받을 권리가 발생하였던 날로 소급하여 예우를 받을 권리가 소멸된다.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第1條 (目的) 이 法은 枯葉劑後遺症患者에 대한 國家有功者等禮遇및지원에관한法律에 의한 報償과 枯葉劑後遺疑症患者 및 枯葉劑後遺症 2世患者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枯葉劑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疫學調査 및 연구 등을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第2條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0.2.3>

1. "枯葉劑"라 함은 월남전 또는 대한민국 비무장지대 南方限界線의 隣接地域으로서 國防部令이 정하는 地域(이하 "南方限界線 隣接地域"이라 한다)에서 나뭇잎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사용된 除草劑로서 다이옥신이 함유된 것을 말한다.

2. "枯葉劑後遺症患者"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者를 말한다.

가.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살포

지역에서 兵役法, 軍人事法 또는 軍務員人事法에 의한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 복무하고 전역, 퇴직한 者와 정부의 승인을 얻어 전투나 軍의 작전에 종군한 記者(이하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者등"이라한다)로서 第5條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者

나. 1967년 10월 9일부터 1970년 7월 31일 사이에 南方限界線 隣接地域에서 兵役法, 軍人事法 또는 軍務員人事法에 의한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 복무하거나 고엽제살포업무에 참가하고 전역, 퇴직한 者(이하 "南方限界線 隣接地域에서 복무하고 전역된 者등"이라 한다)로서 第5條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者

3. "枯葉劑後遺疑症患者"라 함은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者등 또는 南方限界線 隣接地域에서 복무하고 전역된 者등으로서 第5條第2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者를 말한다.

4. "枯葉劑後遺症 2世患者"라 함은 第4條 및 第7條의 규정에 의하여 枯葉劑後遺症患者로 결정, 등록된 者 및 第8條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사망한 枯葉劑後遺症患者로 인정된 者의 자녀(월남전에 참전한 날이후 또는 1967년 10월 9일부터 1970년 7월 31일 사이에 南方限界線 隣接地域에서 복무하거나 고엽제살포업무에 참가한 날이후에 임신되어 출생한 자녀를 말한다)중 第5條第6項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者를 말한다.

第3條 (適用對象者) 이 法은 枯葉劑後遺症患者、枯葉劑後遺疑症患者 및 枯葉劑後遺症 2世患者로서 第4條 및 第7條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등록된 者에게 적용한다.

第4條 (適用對象者의 決定、登錄등) ①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者등 또는 南方限界線 隣接地域에서 복무하고 전역된 者등과 枯葉劑後遺症患者的 子녀가 이 法의 적용 대상자가 되고자 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國家報勳處長(이하 "處長"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0.2.3>

②處長은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者등 또는 南方限界線 隣接地域에서 복무하고 전역된 者등으로부터 第1項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國防部長官에게 신청인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者등 또는 南方限界線 隣接地域에서 복무하고 전역된 者등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등록신청시 제출한 書類에 의하여 당해 신청인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者라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12.28, 2000.2.3>

③國防部長官은 第2項의 규정에 의한 확인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해당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處長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處長은 第1項의 규정에 의하여 枯葉劑後遺症患者의 자녀로부터 등록의 신청을 받은 때, 第2項 但書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인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者등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때 또는 第3項의 규정에 의하여 國防部長官으로부터 신청인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者등이나 南方限界線 隣接地域에서 복무하고 전역된 者등이라는 사실을 통보받은 때에는 韓國報勳福祉醫療公團法 第7條의 규정에 의한 報勳病院의 長(이하 "報勳病院長"이라 한다)에게 관련자료를 송부하여 그 신청인이 枯葉劑後遺症患者、枯葉劑後遺疑症患者 또는 枯葉劑後遺症 2世患者인지의 여부를 검진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國民健康保險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綜合專門療養機關(이하 "綜合專門療養機關"이라 한다)의 진단서(병명란에 최종진단을 기재한 경우에만 하며, 이하 "綜合專門療養機關의 최종진단서"라 한다)를 제출 한 경우에는 그 검진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99.1.21, 1999.12.28, 2000.2.3, 2001.1.16, 2002.1.26>

⑤處長은 第3項의 규정에 의하여 國防部長官으로부터 신청인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者등 또는 南方限界線 隣接地域에서 복무하고 전역된 者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통보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직접 國防部長官에게 해당사실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00.2.3>

⑥報勳病院長은 第4項 本文의 규정에 의한 검진을 한 후 그 결과를 處長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9.1.21>

⑦處長은 第2項 但書의 규정에 의한 서류확인 결과 또는 第3項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결과와 第4項 本文의 규정에 의한 검진결과 또는 第4項의 但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綜合專門療養機關의 최종진단서를 토대로 이 法의 적용대상자인지의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第4項 但書규정에 의한 綜合專門療養機關의 최종진단서를 제출한 자중 당해 진단서에 기재된 질병이 제5조제1항 각호의 1 또는 동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의학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枯葉劑後遺症 2世患者의 경우에는 國家有功者等禮遇및지원에관한法律 第82條의 규정에 의한 報勳審査委員會(이하 "報勳審査委員會"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法의 적용대상자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1, 1999.12.28, 2002.1.26>

⑧處長은 이 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된 者6에 대하여는 이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登錄簿에 등록하여야 한다.